사 업 연 도	· · · · · 주	요계정명세서(갑)		법 사입	인 업자등록	명 번호	(並つ)
	① 구 분	② 근거법 조항	코드	③회사계상	금액	④세무 (조정		⑤차가감금액 (3-4)
	⑩ 고유목적사업준비금	「법인세법」 제29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	53					
준비금	⑩ 퇴직급여충당금	「법인세법」 제33조	12					
충당금	⑩ 퇴직연금부담금	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44조의2	71					
등	⑩ 대손충당금	「법인세법」 제34조	13					
	(16) 대손금	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	72					
	⑩ 합병양도손익	「법인세법」 제44조	55					
	⑩ 분할양도손익	「법인세법」 제46조	56					
손금 산입	⑩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	「법인세법」 제47조	57					
	⑩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	「법인세법」 제47조의2	50					
	⑩ 교환자산양도차익	「법인세법」 제50조	58					
익 금 불산입	⑪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	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6호	59					
	⑩ 특례기부금	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	41					
	⑪ 우리사주조합 기부금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 조의4	78					
기부금	⑪ 일반기부금 한도액	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	66					
	⑪ 일반기부금	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	42					
	⑪ 기타기부금	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4항	73					
	⑪ 접대비 한도액	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	49					
권테니	⑩ 접대비(⑪,⑩포함)	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	65					
접대비	⑪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	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2항	61					
,	⑩ 문화접대비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 조제3항	67					
⑦ 외화자산・부채평가손익		「법인세법」 제42조	74					
등과	반 부동산 관련한 🔞 업무무관 부동산 등 국이자	「법인세법」 제28조제1항	76					
상 여 배당 등		97		기익처분금 상법」 제462		98		

작성 방법

- 1. ③ 회사계상금액란: 이 서식의 계정구분(①)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[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(①)의 금액]을 적습니다.
 - ※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- 2.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란
 - 가. 이 서식의 계정구분(①)별로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봉산입 금액을 적습니다
 - 나.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(과세표준금액 증가)항목인 경우 앙수로 적고,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(과세표준금액 감소)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(숫자 앞에 "-"표시).
- 3. ⑤ 차가감금액란: 회사계상금액(③)에서 세무조정금액(④)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 (⑤)란에 적습니다.
- 4. ⑩ 대손금란: "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(별지 제34호서식)"의 ②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, "대손충당금 및 대 손금조정명세서(별지 제34호서식)"의 ②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②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란에 적습니다.
- 5. ⑪ 특례기부금란
 - 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③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⑦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[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(을)(별지 제76호의16서식(을))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.]
- 6. ⑩우리시주조합 기부금란
 - 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⑨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②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7. (🏟 일반기부금 한도액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(🗗 일반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.
- 8 ⑪ 일반기부금란
 - 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⑥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④ 세무상부인(조정)금액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.
 - ※ 연결법인의 경우 "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76호의16서식(을)]"의 ®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.
- 9. ⑩ 기타기부금란: "기부금명세서(별지 제22호서식)"의 ⑨ 소계란의 라. 그 밖의 기부금(코드50)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 (조정)금액란에 적습니다.
- 10. ⑩ 접대비 한도액란: "접대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⑪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.
- 11. (18) 접대비((19),(20)포함)란
 - 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접대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④ 세무조정금액: "접대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②란 및 ⑩란의 합계액[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]을 적습니다.
 - ※ 연결법인의 경우 "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76호의15서식(갑)]"의 ⑩ 접대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"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(음)[별지 제76호의15서식(음)]"의 ⑩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.
- 12. 🕦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란
- 가. ③ 회사계상금액: "접대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⑯ 총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④ 세무조정금액: "접대비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②의 금액[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 입액]을 적습니다.
- 13. ⑩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"접대비 조정명세서[별지 제23호서식(갑)]"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14. ⑩ 외화자산・부채평가손익란: "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40호서식(갑)]"의 가. 외화자산・부채평가손익란과 나. 통화선도・통화선도・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"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40호서식(갑)]"의 가. 외화자산・부채평가손익란과 나. 통화선도・통화선도・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무 상부인(조정)금액란에 적습니다.
- 15. ⑩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란: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6호서식(갑)]의 ⑧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.
- 16. 🚳 소득처분금액란: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(코드 100)·배당(코드 200)·기타소득(코드 300)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- 17. ⑩ 이익처분금액란: "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[별지 제3호의3서식(4)]"의 중간배당액,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- 18.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.

사 업 연 도	~ · · · · ~	주요계정명세서(을)	법 인 명	(12-17)

1. 재고자산ㆍ유가증권 평가

① 자		② 신고방법	③ 평가방법	④ 회사계산 금 액	조정계	① 조 정 액	
	산 별				⑤ 신고방법	⑥ 선입선출법	① 조 정 액 (⑤ 또는 ⑤와⑥ 중 큰 금액-④)
· 100 제 품	등 및 상 품						
⑩ 반제품 품	품 및 재공						
⑩ 원	재 료						
⑩ 저	장 품						
유가증권	105 채 권						
ㅠ기궁건	106 기 타						
⑩ 합	계						

2. 국고보조금 등 • 공사부담금 • 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

® ₹	분	9 금	액	⑩ 취득자산가액	⑪ 회사손비계상액	⑫ 한도초과액 (⑪-⑩)	⑬ 미사용분 익금산입액
100 국고보	조금등						
119 공사부담금							
① 보험	차 익						

3.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

	적 수			⑧ 회사계상액	19) 조정액
⑭ 가지급금⑮ 가수금⑯ 차 감(⑭-⑮)			⑪ 인정이자	⑩ 외자계경력	(19) 조정택

4. 건설자금이자 조정

20 구 분	② 건설자금이자	② 회사계상액	② 상각대상자산분	2월 차감조정액(120-120-123)
⑪ 건설 완료 자산분				
⑪ 건설 중인 자산분				
합 계(⑪+⑪)				

작성 방법

- 1.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
- 가. ② 신고방법 및 ③ 평가방법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③ 신고방법 및 ④ 평가방법을 자산별로 적습니다.
- 나. ④ 회사계산금액, ⑤ 신고방법, ⑥ 선입선출법과 ⑦ 조정액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⑩ 회사계산금액, ⑯ 신고방법금액, ⑰ 선입선출법금액과 ⑱ 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⑩ 합계란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⑱ 회사계산금액, ⑯ 신고방법금액, ⑰ 선입선출법금액 및 ⑱ 조정액의 계란과 일치해야 합니다.
- 2.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
- 가. ⑨ 금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① 보조금수령액, ⑩ 공사부담금가액 및 ②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⑩ 취득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, ⑥ 공사부담금으로 취 득 또는 지급받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계 및 ⑥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다. ⑪ 회사손비계상액 및 ⑫ 한도초과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⑧ ⑪ 옎의 회사계상액 및 ⑨ ⑱ 옎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라. ⑬ 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㉑ 익금산입액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3.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
- 가. ⑭ 가지급금과 ⑮ 가수금 적수란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가지급금적수(②+⑫)의 계란과 가수금적수(③+⑯)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⑰ 인정이자와 ⑱ 회사계상액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인정이자(⑤+⑯)란과 회사계상액(⑥+⑰)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⑲조 정액란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조정액(⑨+⑳)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4. 건설자금이자 조정
 - ② 건설자금이자, ② 회사계상액, ③ 상각대상자산분 및 ④ 차감조정액은 [별지 제25호서식]의 ① 건설자금이자, ② 회사계상액, ③ 상각대상자산분 및 ④ 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
[별지 제47호서식 부표] 삭제 <2010.3.31>